

	<h2 style="margin: 0;">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4-0-15
			제정일자	2021.3.1.
	개정일자	-		
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2

제정 2021년 3월 1일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원격교육지원 계획, 운영, 평가 및 개선
2. 원격교육지원 스마트 교육 체계 구축 및 개선
3. 원격교육지원 관련 규정 및 위원회 관리 업무
4. 기타 원격교육에 관한 사항

### 제 2 장 조 직

**제3조(센터장 및 부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일반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와 자격은 전항에 따른다.

④ 센터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센터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연구원 등)** 센터에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### 제 3 장 위 원 회

**제5조(위원회)**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구성과 임기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외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
2. 기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8조(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4 장 보 칙

**제9조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